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八)

朴熙永



目 次

第二期 文宗—成宗 (1451—1494)

第一節 機關과施設

- 1) 校書館, 典校署
- 2) 集賢殿
- 3) 藝文館
- 4) 弘文館
- 5) 讀書堂
- 6) 造紙所, 造紙署
- 7) 鑄字所
- 8) 春秋館

9) 正音廳

10) 刊經都監

11) 秘閣, 藏書閣, 古東宮

第二節 鑄字所, 鑄字廳

第三節 實錄

- 1) 春秋館
- 2) 實錄閣
- 3) 實錄
- 4) 史庫

第二期

第二期는 第五代 文宗으로 부터 第九代 成宗까지의 五代 40餘年間을 計하였다.

第二期는 第一期에서 盛하였던 文化가 더욱 發展하여 成宗에 이르러서는 編纂出版事業이 極盛하여 經國大典이라는 法典까지 校正編成하게 되므로해서 여러 法律이 整備完成하였고 따라서 國家의 諸制度까지 確立하게 되었다.

이時期의 事情을 살펴 본다면 于先世子때부터 寛仁孝友하고 學問을 즐기며 臣民의 仰望을 받던 文宗이 即位하여 2年에 旱逝하였고 이어 不過 12歲로 王位를 繼承한 端宗이 또한 3年안에 癸酉靖難으로 因하여 王位를 首陽大君에게 則았기게 되어 首陽大君이 世祖로서 即位하였다. 世祖가 비록 不義로 王位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世祖가 14年間에 배운 文武의 治政은 特記할 여러 略蹟을 남겼던 것이다.

世祖는 太祖부터의 排佛政策으로 因한佛教의 抑壓을 反對로 佛教를 崇尚하여 城內에 大圓覺寺를 建立하고 十三層의 塔을 建立하였으며 한편 刊經都監을 新設하여 佛典의 雕造 模印, 佛典의 譯註刊行等의 事業을 이룩하였던 것이며 國初부터의 모든 法令과 條例를 整理 集成한 經國大全을 編纂完成하여 刊行하였던 것이다.

世祖가 逝去하고 智宗이 即位하였으나 1年만에 이도 逝去하게 되어 成宗이 即位하였는데 成宗은 世祖와는 反對로 佛教를排斥하고 文人과 儒學者를 優待하였으며 成宗의 略蹟中 東國與地勝覽, 樂學軌範, 東文選等 훌륭한 書籍을 編纂刊行케 하였던 일은 歷史上 特記할 일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數次에 걸쳐 活字를 改編하여 鮮明한 活字로서 많은 書籍을 刊行하였던 것이다.

本稿 第一期와 第二期를 合하여 이时期가 李朝文化의 完成期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王權을 確立하였던 時期라고 하겠다.

第一節 機關과 施設

1) 校書館, 典校署

校書館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校書館과 鑄字所가 別立하여 校書館은 木板本을 鑄字所는 活字本을 각각 印刷하여 오다가 世祖6年(1460) 5月21日 鑄字所는 校書館에 合屬하게 되어 校書館은 木板本과 活字本을 아울러 印刷하고 刊行하는 所謂 國立印刷出版局으로 運營하게 되었다.

校書館은 世祖12年(1466) 1月15日 高麗時代에 稱하던 典校署라는 名稱으로 改稱하게 되었고 官員에서 校書郎은 博士, 著作郎은 著作校勘, 正字, 副正字를 著作郎이라고 각각 改稱하였다.

佛教을 崇尚하던 世祖는 刊經都監을 設置하여 佛典의 雕造와 佛典의 譯註刊行等의 事業을 專擔케 하였었는데 佛教를 排斥하는 成宗이 �即位하자 成宗元年(1470) 7月26日 刊經都監을 典校署에 屬하게 하고 刊經都監이 管掌하던 事業을 典校署가 이어 마치도록 하였다.

典校署는 成宗15年(1484) 1月21日 校書館이라는 前의 名稱으로 復稱하게 되었는데 典校署를 校書館으로 復稱하게 된 것은 典校博士 高彥謙等의 上疏에 依한 것이다. 高彥謙等의 上疏文은 아래와 같다.

『掌書之任 自古爲重 漢曰天祿閣 唐曰秘書監, 高麗太祖建內書省 成宗改爲秘書省 連我 太祖開國 改正官制 稱校書監 序十二寺之上 太宗改稱校書館 增置校理一人與 藝文館 成均館 並稱爲三館 世祖革三館之法 改館爲署 列從五品衙門 是豈朝廷並置 四館之意哉 請增本署爲三品

衙門 請復校書館 命下勘校廳』

以上으로 볼때 典校署를 校書館으로 改稱한 것이다 典校署가 從五品衙門에 있던 것이 五品에서 三品으로 升格하였던 것이다.

또한 成宗朝에 이룩된 經國大全을 보면 校書館——掌印頒經籍及香祝 印篆之任

並用文官 築文精熟者三人隨品兼差 提調二員 別坐別提并四員 博士以下又以議政府司錄一員 奉常寺直長以下一同兼 次次遷轉 一年 兩都目 二員去官

正三品 判校 一員 (他官兼)

從五品 校理 一員

別坐

正六品 別坐

從六品 別提

正七品 博士 二員

正八品 著作 二員

正九品 正字 二員

從九品 副正字 二員

이라 있고 下級吏는 아래와 같이 있다.

治匠 六名

均字匠 四十名

印出匠 二十名

刻字匠 十四名

鑄匠 八名

彫刻匠 八名

木匠 二名

紙匠 四名

① 世祖實錄 卷20 世祖 6年5月丁酉條

② " 卷38 " 12年1月戊午條

③ 成宗實錄 卷 6 成宗元年7月壬寅條

④ " 卷162 " 15年正月己酉條

⑤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7 校書館條

2) 集賢殿

集賢殿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集賢殿은 世祖2年(1456)6月6日 이를 廢止하고 集賢殿에 所藏되어 있던 書冊들을 藝文館으로 옮겨서 藝文館으로 하여금 集賢殿에 있던 圖書를 管掌하게 하였는데 文化와 學問發展에 빛은 贡獻을 하여온 集賢殿을 廢止하게 된 原因은 集賢殿學士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壇, 柳誠源, 前節制使 俞應孚等이 世祖의 祜奪에 憤慨하여 端宗의 復位를企圖하였다가 이 일이 發覺되어 死刑을 當하였는데 이들의 大部分이 集賢殿出身이었으므로 해서 世祖가 集賢殿을 廢止하였다 것이다.

集賢殿이 廢止되기 以前인 文宗元年(1451)7月24日 觀覽에 切한 書籍을 明으로 가는 使臣에게 이를 사오도록 集賢殿으로 하여금 磨勘케 하였는데 이때 必要로 하였던 書籍은 東嚴周禮, 儀禮傳通解續儀禮集傳集註, 通志, 中庸輯略, 資治通鑑總類, 通錄本末, 宋史 朱文公集, 宋朝名臣五百家播芳大全文粹, 續文章正宗, 備學文官, 宋朝名位奏議等의 書籍이었다.

① 世祖實錄 卷4 世祖2年 6月甲辰條

② 文宗實錄 卷8 文宗元年7月庚申條

3) 藝文館

藝文館은 太祖가 建國과 同時に 세운 官制를 制定한 太祖元年(1392) 7月28일에는 高麗를 模倣하여 藝文春秋館이라고 하였다.

藝文春秋館의 官員은

監館事 一員 (侍中以上이 兼)

大學士 二員

知學士 二員 (資憲以上이 兼)

學士 二員

同知館事 二員 (嘉善以上이 兼)

編修官 二員

應敎 一員

供奉官 二員

修撰官 二員
直館 四名

이 있었다.

藝文春秋館은 얼마 안되어서 藝文館과 春秋館의 두 機關으로 分離하게되어 각각 獨立된 官署로서 設置 運營하게 되었는데 藝文春秋館이 分離된 年代는 알수 없으나 太宗 14年(1414) 5月 10日에 領春秋館事河備云云하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太宗14年 以前에 分離된 것으로 推測된다. 分離된 後의 官員은

領事 一員 (領政事이 兼)

大提學 一員

提學 一員

直提學 一員 (都承旨가 兼)

應敎 一員 (弘文館直提學로부터 校理 사이에서 擇하여 兼)

奉敎 二員

待敎 二員

檢閱 四員

이 있었다.

藝文春秋館에서 分離되어 藝文館으로 獨立된 後로는 辞命의 撰制를 掌하였던 것이 世祖 2年(1456) 6月 6日 集賢殿의 廢止로 말미아마 集賢殿의 所藏圖書를 引受 管掌하게 된 後 世祖 3年(1457) 9月 18日 儒生들이 書籍을 연기 어려움을 念하여 梁誠之로 하여금 藝文館의 藏書를 刊行케 하였으며 世祖 4年(1458) 7月 24일에는 藝文館 所藏書籍의 散逸을 念慮하여 經史, 予集, 雜書의 三房으로 나누어 典守列하여 直提學, 直館中 一員을 보내어 이를 摠治케 하였고, 世祖 9年(1463) 1月 19일에는 藝文館에 命하여 所藏의 諸書를 각 二件을 挑出하여 古東宮에 移藏托록 하였다.

成宗元年(1470)에는 藝文館의 規模를

擴張하여 副提學以下 修撰에 이르는 十七
員을 增置하여 集賢殿은 아니지만 集賢殿
의 官員과 集賢殿의 管掌이었던 文翰經筵
記注等의 일을 集賢殿의 例에 따라 藝文
館에서 掌하였다가 成宗 10年(1479)에는
副提學以下 修撰에 이르는 諸官을 滅하고
이들을 弘文館으로 보냈다 그려므로 藝文
館은 다시금 辭令을 撰하는 일을 管掌하
게 되었다.

經國大全을 보면

藝文館	——掌制撰辭令 並用文官 提學以上他官兼 大提學 主文 奉教以下官初授時 議政府同吏曹 弘文館 春秋館 本館 講道鑑 左傳 諸史中 入格者用之一年 兩都目 二員去官 階卑者准其職加階 次次遷轉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博士以下 訓練院 紂軍以下 同
正一品	領事 一員 (議政이 兼)
正二品	大提學 一員
正三品	直提學 一員 (都承旨가 兼)
正四品	應敎 一員 (弘文館直提學半 터 校理中擇하여 兼)
正七品	奉員 二員
正八品	侍敎 二員
正九品	檢閱 四員

① 太祖實錄 卷1 太祖元年 7月丁未條

②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藝文館條

③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5月壬午條

④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藝文館條

⑤ 世祖實錄 卷 4 世祖 2年 6月 甲辰條

⑥ " 卷 9 世祖 3年 9月 己卯條

⑦ " 卷13 世祖 4年 7月 己酉條

⑧ " 卷30 世祖 9年正月 己酉條

⑨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藝文館條

⑩ " " " "

4) 弘文館

世祖 2年(1456) 6月 6日 端宗復位問題
로 集賢殿이 廢止^①後 世祖 9年(1463) 11
月 17日 當時 同知中樞院事 梁誠之가 崇
文殿과 弘文館의 設置를 上疏하였다^② 崇
文館은 不許되고 藏書閣을 弘文館으로 하
여 設置하게 되었다. 藝文奉敎以下 博士
著作 正字等을 兼帶하여 秘書의 出納을 主
掌하였는데 設立當時의 官官은

大提學	一員
提學	一員
提直學	一員
直館	一員
博士	一員
著作郎	一員
正字	二員

이 있었다.

③ 成宗元年(1470)에는 藝文館이 規模가
擴大^④되어 集賢殿이 하던 일을 하게
되더니 成宗 10年(1479)에는 弘文館이 規
模가 擴大^⑤되어 集賢殿의 일을 繼承
하게 되었는데

經國大全을 보면

弘文館	——掌內府經籍 治文翰 備顧問 並用文官 提學以上以他官兼 告帶經筵 別提學至副修撰又帶知製敎 文官六品 以上亦擇差 直提學以下有缺 不計仕數 以次遷轉
-----	--

正一品 領事 一員 (議政이 兼)

正二品 大提學 一員 (他官이 兼)
從二品 提學 一員

正三品 副提學 一員 (堂下)
直提學 一員

從三品 典翰 一員

正四品 應敎 一員

從四品 副應敎 一員

正五品	校理	二員
從五品	副校理	二員
正六品	修撰	二員
從六品	副修撰	二員
正七品	博士	一員
正八品	著作	一員
正九品	正字	二員

이라 있다.

弘文館의 官員을 直提學으로 부터 應敎까지를 東壁, 校理부터 修撰까지를 西壁, 博士부터 正字까지를 南壁이라고 하였으며 한편 弘文館을 玉堂, 玉署, 瀛閣, 端薈院, 清燕閣이라고도 称하였다.

- ① 世祖實錄 卷 4 世祖 2年 6月甲辰條
- ② " 卷31 世祖 9年11月辛未條
- ③ " " "
- ④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弘文館條
- ⑤ " " " "

韓國史辭典 P421 弘文館條

5) 讀書堂

讀書堂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機關이다.

世祖 2年(1456) 6月6日 集賢殿을 废止 하면서 ① 讀書堂도 이를 废止하게 되었다. 成宗에 이르러 成宗 24年(1493) 5月 12日 ② 龍山 豆毛浦(龍山東湖의 北麓)에 있는 废寺에다 復舊 設置하게 되었는데 讀書堂이 東湖에 위치하였던 關係로 湖堂이라고도 하였다.

- ① 世祖實錄 卷4 世祖2年 6月甲辰條
- ② 成宗實錄 卷277 成宗 24年 5月甲戌條

6) 造所紙, 造紙署

造紙所는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世祖 12年(1466) 1月 15日 官制를 改定

하면서 造紙所는 造紙署라고 改稱하게 되었다.

造紙署의 官員은 司紙가 一員 別提가 四員이 있었는데 이들은 從六品이 있으며 下級吏로는

木匠	二員
簾匠	八員
紙匠	八十一員

이 있었다.

② 造紙所는 中央政府에서 必要로 하는 종 이를 製紙하여 補給하는 한편 明으로부터 的要求에 依한 製紙도 하였던 것으로서 그 一例로 世祖 9年(1463) 2月 19日 明의 皇帝가 白厚楮紙를 求하여 왔으므로 造紙所로 하여금 이를 製紙하여 辦하게 한事實이 있다.

- ①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1月戊午條
- ② 經國大全
- ③ 世祖實錄 卷30 世祖 9年 2月戊寅條

7) 鑄字所

1) 第2節 鑄字所에서 詳述함

8) 春秋館

第3節 實錄에서 詳述함

9) 正音廳

正音廳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한글의 研究와 普及에 貢獻하는 한편 여러 文獻을 한글로 翻譯하여 이것을 印刷出版하였던 正音廳은 文宗2年(1452) 11月2日 이를 废止하였다.

- ① 端宗實錄 卷4 端宗即位年 11月庚申條

× × ×

第二期中 한글인 所謂 謺文으로 이룩된 圖書 또는 口訣의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世祖 4年(1458) 10月 15日 中樞 金鉤參議 李承召로 하여금 右輔德 崔善復等 12人을 거느리고 初學字會를 謂文으로 撰하게 하였는데 이事業은 처음에 判書 崔恒 參議 韓繼禧에 命하였는데 延遲되어 이루어지자 못하였으므로 다시금 命하였다.

世祖 7年(1461) 3月 14日 知中樞院事 崔恒 左承旨 韓繼禧等에 命하여 調書를 謂譯케 하였다.

世祖 7年(1461) 8月 27日 藝文提學 李承召行上護軍 梁誠之等에게 明皇誠鑑을 謂譯케 하였다.

世祖 9年(1463) 5月 15日 永膺大君 琰都承旨 洪應, 前尚州牧使 金守溫等에 命하여 明皇誠鑑의 歌詞를 謂譯케 하였다.

世祖 9年(1463) 12月 19日 中叔舟 崔恒 等에게 兵書를 口訣케 하였다.

世祖 10年(1464) 9月 8日 武經을 口訣케 하였다.

世祖 11年(1465) 11月 12일 우리 나라 儒學者가 所定한 四書五經의 口訣과 鄭夢周의 詩를 口訣한 것을 求하로록 하였다는바 四書五經이 모다. 口訣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測한다.

世祖 12年(1466) 3月 5일 成均館에 幸次하여 親定周易口訣을 頒布하였다.

世祖 13年(1467) 12月 14일 中樞院僉知鄭自英, 行上護軍 丘從直, 大司成 金禮蒙이 詩書口訣을 校正하여 進하였다.

世祖 14年(1468) 8月 8일 寧城君 崔恒 等에 命하여 小學, 周易, 禮記를 口訣케 하였다.

成宗 14年(1483) 7月 29일 徐居正 蘆思慎, 許琮, 魚世謙, 柳洵, 柳允謙에 命하여 聰珠詩格과 黃山谷詩集을 謂譯케 하였다.

成宗 19年(1488) 9月 20일 老醫로 한여금 鄉藥集成方에 收錄되어 있는것 中에서常用하는 藥丸을 抄하여 이를 謂譯하여 民間에게 頒布케 하였다.

成宗 20年(1489) 12月 6일 権五福에게 直解小學을 碩譯케 하였다.

成宗 25年(1494) 4月 2일 李昌臣, 李琚 権五福이 碩譯한 安驥集, 水牛經을 印刷頒布케 하였다.

① 世祖實錄 卷14 世祖 4年 10月 己巳條

② " 卷23 世祖 7年 3月 乙卯條

③ " 卷25 世祖 7年 8月 甲午條

④ " 卷31 世祖 9年 5月 癸卯條

⑤ " 卷31 世祖 9年 12月 壬寅條

⑥ " 卷34 世祖10年 9月 戊午條

⑦ " 卷37 世祖11年 11月 丙辰條

⑧ " 卷38 世祖12年 3月 丙午條

⑨ " 卷44 世祖13年 12月 甲午條

⑩ " 卷47 世祖14年 8月 乙未條

⑪ 成宗實錄 卷156 成宗14年 7月 己未條

⑫ " 卷220 成宗19年 9月 庚辰條

⑬ " 卷235 成宗20年 12月 己丑條

⑭ " 卷289 成宗25年 4月 庚申條

10) 刊經都監

李朝가 建國하여서 부터 佛教를 排斥하는 政策을 세워 이를 實踐하여 왔으나 第七代 世祖는 이제 까지와는 反對로 佛教를 崇尚하였고 따라서 城內에 圓覺寺를 建立하는 한편 世祖 7年(1461) 6月 16일에는 刊經都監을 設置하여 佛典의 校訂 國譯刊行等의 일을 管掌하게 하였던 것이다.

世祖 8年(1462) 1月 30일 昌德宮을 增築할때 火災를 念慮하여 刊經都監 近傍의人家 23戶에게 家基를 折給하여 이를 撤去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世祖 13年(1467) 12月 14일 司寶院 東廊의 失火로 司寶院

③

과 刊經都監 諸庫가 延燒하였다 것이다.

刊經都監은 佛教를排斥하는 成宗의 即位로 因하여 成宗 元年(1470) 7月 26日 이 刊經都監의 事業은 典校署에 屬하게 되어 典校署로 하여금 刊經都監이 繼續하면 事業을 畢하게 하였으니 刊經都監은 不過 10年間 存在하였다 機關이 있었다.

刊經都監이 設置되어 이룩한 事業中 몇 가지를 추려 본다면

世祖 8年(1462) 10月 王이 親히 首楞嚴經을 翻譯하여 刊經都監으로 하여금 雕造케 하였고

世祖 9年(1463) 9月 2日 刊經都監이 新刊한 法華經을 進하였고

世祖 10年(1464) 2月 8日 金守溫, 韓徽禧, 蘆思慎等에 命하여 金剛經을 翻譯해서 刊經都監으로 하여금 彫印케 하였고

世祖 13年(1467) 11月 13日 刊經都監으로 하여금 無註法華經을 印하여 日本에 賦하도록 한 以外에도 여러 經典을 刊行하고 있다.

- (1) 世祖實錄 卷24 世祖 7年 6月 乙酉條
- (2) " 卷27 世祖 8年 正月 乙丑條
- (3) " 卷44 世祖 13年 12月 丙午條
- (4) 成宗實錄 卷 6 成宗 元年 7月 壬寅條
- (5) 首楞嚴經翻解 進首楞嚴經箋

- (6) 世祖實錄 卷31 世祖 9年 9月 戊午條
- (7) " 卷32 世祖 10年 2月 辛卯條
- (8) " 卷44 世祖 13年 11月 乙亥條

11) 秘閣, 藏書閣, 古東宮

秘閣은 高麗時代로부터 宮中에 있었던 藏書閣이다.

成宗 5年(1474) 11月 22日 同知事 李承召가 上疏하기를 史記, 前漢書는 이미 印하였으나 其他의 諸史書는 秘閣에만 藏하여 있을뿐 民間에는 絶無하므로 後漢書等

의 諸史書를 印頒할 것을 請하였다 바 成宗은 右副承旨 金永堅에게 諸史印頒의 일 을 掌하게 하였다. 또 成宗 6年(1475) 6月 5日 左議政 韓明洽가 藏書閣의 扁額을 進하였다고 있으며 藏書閣에 關하여는 世祖 9年(1463) 11月 17일 藏書閣을 弘文館 으로 하였다고 있는 것을 볼때 藏書閣을 弘文館으로 한以後에 藏書閣의 扁額을 進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弘文館은 機關名이고 藏書閣은 閣의 名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祕閣과 藏書閣은 이것이 別個의 것인지 또한 同一한 것이 別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인지 記錄이 없어 알수 없으나 ullen 後代에 가서는 祕閣에서 書籍을 刊行하고 있다.

世祖 9年(1463) 1月 19日 藝文館에 命하여 藝文館이 所藏하고 있는 諸書를 각 2件式을 擇出하여 古東宮에 移藏토록 하였는데 古東宮에도 藏書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 ① 成宗實錄 卷49 成宗 5年 11月 癸酉條
- ② " 卷56 成宗 6年 6月 壬午條
- ③ " 卷31 世祖 9年 11月 辛未條
- ④ " 卷30 世祖 9年 正月 己酉條

第2節 鑄字所 鑄字廳

鑄字所는 第1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鑄字活字로서 印刷하는 일을 專擔하여 많은 書籍을 印刷出版하여 業蹟이 많은 鑄字所는 世祖 6年(1460) 5月 21日 校書館에 合屬하게 되었는데 이로서 國家의 印刷事業은 單一化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世宗時代까지 이미 活字印刷術은 數次改良되었는데 第二期에서는 印刷術의 改良은 없었고 數次에 걸친 活字의 改良改鑄만이 있었다.

世祖元年(1456)에는 書畫家로서 이름 높은 姜希顏이 字本을 書하여 銅으로 活字를 鑄造하였는데 이것을 乙亥字라고 한다.

世祖 11年(1465)에는 政治家이며 善書家인 鄭蘭宗이 字本을 書하여 銅으로 活字를 鑄造하였는데 이것을 乙酉字라고 하며 圓覺經이 이것으로 印刷한 것이다.

成宗 15年(1484) 8月 21日 成宗이 內藏의 店本 歐陽修集과 烈女傳의 大小의 字體가 좋아 보아니 이것을 字本으로 해서 鑄字함이 어찌나는 吻附가 있어 行護軍 李有仁에게 監鑄를 命하고 左承旨 機健으로 하여 금 이 일을 掌하게 하여 同年 12月 12일에는 銅으로明朝體의 大字가 鑄畢하였다. 이는 李有仁이 啓하였는데 成宗 15年(1484)에 鑄字한 大小 30萬字의 活字를 甲辰字라고 한다.

成宗 24年(1493) 明의 資治通鑑綱目을 字本으로 하여 銅으로 活字를 鑄造하였는데 이것을 癸丑字라고 한다.

成宗 15年(1484) 甲辰字의 大字가 完成하였다는 設錄이 있는 成宗實錄 卷173 成宗 15年 12月 乙丑條에

「鑄字廳 堂上 李有仁 來啓畢鑄大字」라고 있는바 여기에 鑄字廳이라는 名稱의 機關이 보이는데 成宗 15年(1484)은 鑄字所가 校書前에 合屬된 世祖 6年(1460)보다 25年以後의 記錄인 것으로 보아 鑄字廳은 正常적인 機關이 아니고 많은 數의 活字를 改鑄할 때 臨時의 으로 設置하였다가 活字의 鑄造가 끝나면 곧 이것도 解體되는 그러한 機關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① 世祖實錄 卷20 世祖 6年 5月 丁酉條

② 韓國史辭典 P. 351 鑄字條

③ " " "

④ 成宗實錄 卷169 成宗 15年 8月 乙亥條

⑤ " 卷173 成宗 15年 12月 乙丑條

⑥ 韓國史辭典 P. 351 鑄字條

⑦ " " "

⑧ 李相國 韓國文化史概觀 P. 402

第3節 實錄

1) 春秋館

春秋館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官署이다.

世祖 12年(1466) 1月 15日 官制를 改定할 때 春秋館의 領館事를 領事, 一知館事를 知事로 改稱하였다.

經國大全을 보면

春秋館——掌記時政 並用文官 以他官兼修撰官以下以承政院 弘文館副提學以下下議政府舍人 檢詳 藝文館奉敎以下及侍講院堂下官二員 司憲府執義以下司諫院 承文院 宗簿寺 六曹堂下官各一員兼

正一品	領事	一員 (領議政)
	監事	二員 (左右議政)

正二品	知事	二員
-----	----	----

從二品	同知事	二員
-----	-----	----

正三品	修撰官	編修官
-----	-----	-----

從三品	編修官	編修官
-----	-----	-----

正四品	"	"
-----	---	---

從四品	"	"
-----	---	---

正五品	記注官	記注官
-----	-----	-----

從五品	"	"
-----	---	---

正六品	記事官	記事官
-----	-----	-----

從六品	"	"
-----	---	---

正七品	"	"
-----	---	---

從七品	"	"
-----	---	---

正八品	"	"
-----	---	---

正九品	"	"
-----	---	---

이라 있다.

①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1月 戊午條

2) 實錄閣

實錄閣은 第一期에서 繼續되는 閣이다.

文宗 2年(1452) 7月 7日 英陵의 碑文을

實錄閣과 忠州, 全州, 星州의 史庫에 藏하게 하였는데 ① 實錄閣에다 實錄以外의 것으로서 實錄만큼 所重한 것을 아울러 藏하였음을 알수 있다.

① 端宗實錄 卷2 端宗即位年 7月 戊戌條

(筆者 韓國外大司司長)